

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2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1.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